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6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1. 2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11. 30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2. 12. 17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사유

- 농업기반공사의 명칭변경과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추가 및 신설하여 전문개정 함으로써 소하천 점 ·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점용료의 감면 사항을 별표로 함(안 제3조)
나. 부담금 부과대상자등의 조항을 신설(안 제8조)
다. 부담금 부과액의 결정등의 조항을 신설(안 제9조)
라. 부담금 부과대상토지등의 가액조사의 조항을 신설(안 제10조)
마. 부담금 부과기준의 조항을 신설(안 제11조)
바. 부담금 감면의 조항을 신설(안 제12조)
사. 납입통지의 조항을 신설(안 제13조)
아. 분할납입의 조항을 신설(안 제14조)
자. 강제징수의 조항을 신설(안 제15조)
차. 허가수수료의 징수의 조항을 신설(안 제16조)
카. 이의신청의 조항을 신설(안 제1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해 오던 우리군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관계기관의 농업기반 공사로의 명칭 변경과 그동안 조례운영상 미비했던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전문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함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신설되는 조항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2. 12.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